

[일련번호 : 6]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 검토 소홀에 따른 환급 지연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및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에 따르면 광역교통시행 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야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후 부담금이 과소 또는 과다 부과·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방법 등)에 따르면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부담금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이자(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 산정)를 함께 알려야 한다.

같은 법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담금의 감면)에 의하면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2023. 7. 5. 신정4동 971-9 외 2필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통보에 따라 2023. 8. 31. 사업시행자 ▲▲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6,696,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납부기한(2024. 8. 31.) 내인 2024. 5. 22. 완납하였다.

이후 2024. 5. 24. 건축과의 사용검사 처리 통보(건축과-14443, 2024.5.24.) 시 첨부된 사용검사 신청서상 ‘공공임대, 기타, 35세대’로 주택유형별 세대수가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과에서는 이를 확인·조사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 사업’은 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담당자는 이미 납부된 부담금에 대하여 감면 및 환급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환급 사유가 있을 경우 환급금과 이자 산정액을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25. 1. 22.에 이르러서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전액 감액 결의가 이루어지고 2025. 1. 23. 환급 결정결의를 통해 환급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납부일의 다음날(2024.5.23.)부터 환급결정일(2025.1.23.)까지의 환급이자 405,200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 지연 내역

사업명	사업 시행자	납부일	사용검사 처리 통보일	감액 및 환급결정일	환급시 발생한 이자	지적사항
◆◆사업	▲▲	2024.5.22.	2024.5.24. (환급검토 소홀)	2025.1.23.	405,200원	부담금 감면 검토 소홀에 따른 환급 지연. 그 결과 이자 발생(총 246일의 이자를 발생시킴)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
시기 바라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